<u>〈간이투자설명서〉</u>

작성기준일: 2025.04.14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W960]

| 투자 위험 | 등급 | 3 등급 | [다소 | 높은 | 위험] |
|-------|----|------|-----|----|-----|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해외 및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 정책 등에 따른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 송금지연, 투자대상국의 거래소 장기간 휴장에 따른 환매지연 위험,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 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 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인컴 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 기본 운용 전략]

| 구분 | 진단 | 대안 |
|--------|------------------------|------------|
| | - 글로벌 경기위축과 보호주의 강화 | 인컴 |
| 저성장 | | 배당귀족(배당성장) |
| | - 구경제의 몰락과 신성장 기업들의 탄생 | 기회 |
| 한국경제와 | -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경제구조 | |
| 증시 상대적 | - 불리한 인구구조, 정체된 생산성 향상 | 글로벌 투자 |
| 부진 심화 | - 기존산업 하향세, 신성장 동력 부재 | |
| 그=# 경기 | -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가 부채 | |
| 글로벌 경기 | - 지정학적 갈등 심화 | 통화 분산 |
| 침체 가능성 | - 자국우선주의, 포퓰리즘 추세 강화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구분 | 인컴 | 배당귀족 | 기회 |
|------------|---|---|--|
| 투자비중 | ± 40% | ± 40% | ± 20% |
| 목적 | - 높은 수준의 배당/분배금 수취로 규칙적 현금 흐름 확보 - 낮은 변동성으로 펀드 수익률 안정성 제고 |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으로, 주식에서 퀄리 티, 배당, 성장 요인의 조화를 통해 안 정감 있고 꾸준한 자본차익과 배당 동 시 추구 | 매크로, 산업, 기업, 테마 등에 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발굴을 통 해 적극적 자본 차익 추구 |
| 주요 투자대상 | 일반 주식 대비 변동성이 낮고 배당(분배) 수익률이 벤치마크지 | 장기간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으로 이는 견조한 사업 구조와 높은 주주환 | 운용사 자체 리 서치 및 투자 |

| | 수 대비 높은 자산 (고배당주식, 리츠, 권, 커버드콜ETF 등) | - | - 미당금 (S8 Ret | 의지를 반영 미국주식(US): 과거 25년 금을 증액한 기업 &P 500 Dividend Arist turn Index 구성 기업) 비미국주식(Non-US): 과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 | ocrats Total | 기회 발굴에 따 른 초과 수익 기회 발견 |
|----|---|---|--------------------------------------|--|--------------|---|
| 예시 | 통화채권, 이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주식형 한국고배 당주식, 미 국우선주, 미당주 기타 나 드콜, 이 버드 나 버드 사 비 다 다 나 버드 사 이 당 등 집합투 | Ret Al Co Br Co Ke J.N Ch Jo | P 500 Dividend Aristiturn Index Top 10 종목 중목명 bbVie Inc. onsolidated Edison Inc. rown & Brown Inc. oca-Cola Co. envue Inc. M. Smucker Co. hubb Limited. ohnson & Johnson oper Technologies, Inc. tmos Energy Corp. ※ 2025 | | - 글로벌 매크 로 환경의 변곡 점 포착 - 개별 기업의 턴어라운드 확 인 - 장기 성장 테 마 추종 |

-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펀드 포트폴리오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 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 |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클래스 종류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0%이내 | 1.5820% | 0.70% | 1.580% | 1.5832% | 265 | 433 | 607 | 973 | 2,000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 없음 | 1.8820% | 1.00% | 1.670% | 1.8820% | 197 | 400 | 609 | 1,046 | 2,261 | |
| 투자비용 |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0%이내 | 1,2320% | 0.35% | 1.200% | 1.2334% | 180 | 314 | 452 | 746 | 1,579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 없음 | 1.3820% | 0.50% | 1.350% | 1.3829% | 146 | 296 | 453 | 782 | 1,712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mark>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 '비용)을 의미</mark>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 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실적 | | | | | | (난위: %) |
|------|----|-------------|-------------|-------------|-------------|-------------|
| | 22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추이 | 종류 | 2024.01.16~ | 2023.01.16~ | 2022.01.16~ | 2020.01.16~ | 2019.12.02~ |

(연평균 수익률)

| | 2025,01,15 | 2025,01,15 | 2025.01.15 | 2025,01,15 | 2025,01,15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 17.05 | 15.18 | 9.71 | 13.25 | 13.26 |
| 비교지수 | 14.51 | 14.14 | 3.79 | 7.58 | 8.24 |
| 수익률변동성 | 7.92 | 7.83 | 9.83 | 13.38 | 13.21 |

(주1) 비교지수 = (0.95 * [MSCI ACWI (USD)]) + (0.05 * [CALL금리])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 | | | 운용현황 | | 연평균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 | | | 운용 |
|-----|------|-------------|-----------------|--------------------------|-------|-----------------------------------|-------|-------|------------|
| 성명 | 생년 | 직위 | コミモフコ | 0070/ | 운성 | 용역 | 운 | 용사 | 경력 |
| | | | 집합투자기 구 수(개) | 운용규 모(억원) | 최근 | 최근 | 최근 | 최근 | 년수 |
| | | | 1 1 (* 11/ | 76/ | 1년 | 2년 | 1년 | 2년 | |
| 정신욱 | 1980 | 책임 (수석) | 7 | 2,376 | 18,92 | 16.98 | 18,92 | 16.98 | 16년 8개월 |
| 박종한 | 1983 | 부책임 (수석) | 12 | 2,805 | 18.92 | 16.98 | 18.92 | 16.98 | 2년 11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 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 의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 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랍니다. | | | | | | | |
|----------|-----------------------|---|---|---|--|--|--|--|
| | 구 분 | | 투자위험의 | I 주요내용 | | | | |
| | 원본손실위험 |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 낳습니다. 따라서 투 내지 감소의 위험은 <u>먼</u> 당사자도 투자선 은행의 예금과 달리 | 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간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산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실적 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 |
| |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 | 험에 노출됩니다. | 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주식의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 금리변동위험 |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 이 상승하면 채권가 | 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 | | | |
| 주요투자 |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⁵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비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경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에게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호 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 | | | | | |
| 위험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 양국간에 이중 과세 조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환매지연위험 |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 | | 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 | | | |
| |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위험 | |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자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환율 변동위험 |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유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 자하기 때문에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 | | | | |
| | 환해지 위험 ※상기 위험들은 일부 |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 수도 있으며, 횐혜지 된 부분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 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횐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 | 환혜지는 외화자산이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고자 부분 환혜지 전략을 수행수도 있으며, 환혜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배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는 없는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신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17시 이전에 자금을 | 읔 난인하 경우: |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 | | |
| 매입 방법 | 자금을 납입한 영 | 업일로부터 3영업일(D+2)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 | 환매 방법 | 한대청구일로부터4영업일(D+3)에공고되는기준가격을적용.88업일(D+7)에관련세금등을공제한후환매대금을지급합니다. | | | | |
| 방법 | | 을 납입한 경우: 업일로부터 4영업일(D+3)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 |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5영업일(D+4)에공고되는기준가격을 적용.9영업일 | | | | |
| | | | | | | | | |

| | El . | | | (D.O)에 기거내기 드이 고개의 후 | | | | |
|------------|---|---|------------------------|---|--|--|--|--|
| | 다. | | | (<u>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u>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
| <u></u> 환매 | | | - | <u> </u> | | | | |
| 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 | · 다. | | | | | | |
| | | - 다인 기즈가격 = (저인 지칭 | 하트자기구 재사초애 - 브레초 | 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죄수 | | | | |
| | 산정방법 | | | 국가단을 합합 다시기 중의 부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 기준가 | 공시장소 | | 투자업자 (vam.koreainvestr | . — | | | | |
| |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 | 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 에 게시합니다. | | | | |
| | | | | | | | | |
| |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 | | | | | | |
| | (1) 거두사와 일반입인이 믿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제 이익에 대해서는 15.4%(시영: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 | | | | | | |
| |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 | | (2) 연금저축계좌 가입지 | h에 대한 과세(종류 C-P | ,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의 | | | | |
| | | | | 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 | |
| 과세 | | | 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4 | 으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 | | | |
| -111 | 수익자 |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 | | | | | |
| | |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 | | | | | |
| | 좋습니다. (5)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 | | | | | | | |
| | |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 | | | | | |
| |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 | | | | | | | |
| | | | | ,000-200+30+30)에 되어 100 원의 근실이 많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 | | | |
| | |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 | 큼 추가된 1,100 원(1,000 | 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집합 | 한국투자밸류자 _· | | | | | | | |
| 투자업자 | , . – | 5978.6300 / 인터넷홈 ^피 | | · |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 | 모집・매출총액 | | | | | |
| 효력발생일 | 2025년 4월 22 | _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판매회사 | , | am.koreainvestment.c | , | □ - - | | | | |
| | | 회(dis.kofia.or.kr)의 인 나이모장 오야 개무정 | | 쓰아시기 마닙니다. ·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 | | | | |
| 참조 | | 사업폭식, 요약 새부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글경시 세4구 업업무사기구 판단회 | | | | |
| | | | | 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 | | | | |
| | | | . – – – | 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 | | | |
| | 감습니다. | | | * 11 3 1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 | | | | | |
| 집합투자 |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기구의 | | | |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 | | | |
| 종류 | 수수 서최 | | | 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 | | | |
| | 판매 | | |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수수료 | 수류 │ | |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 | | | |
| | | 구(C) | |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가 익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 | | | |
| | 노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 | | | | | | |

| | |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
|------|----------|---|
| | |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 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
| | 온라인(e) |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
| | |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는</mark> |
| 판매 | 오프라인 |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
| 경로 | | 판매회사로부터 <mark>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mark> |
| | 03101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
| | 온라인 |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
| | 슈퍼 |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
| | (S) |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 수수 료를 징구하는 경우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
| 7 | |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
| | 파막한(K) | 자기구입니다. |
| | 무권유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
| 기타 | 저비용(G) |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7157 | | Wrap Account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
| | 랩(W) |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
| |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21.2L/E) |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가 매입 |
| | 기관(F) |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